



# 의료취약계층 치료비 지원 협약서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갑” 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을” 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환자의 진단검사비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 제1조 (목적)

“갑”은 “을”을 통해 추천 받은 대상자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갑”의 의료비 지원 규정에 의거하여 지원하고,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료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지원 대상 및 기준)

“갑”은 “을”이 추천하는 대상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 대상을 지원한다.

### 1. 지원대상

- 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나. 재산기준이 극빈하다고 인정되는 자(최저생계비 200% 이하)

### 2. 지원기준

- 가. 모든 임상과 진단검사비
- 나. 외래 치료비 및 입원비

## 제3조 (지원 범위 및 시기)

“갑”이 진료비를 지원하는 범위 및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진단 및 수술을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입원치료비
2. 대상자 1인 최대 후원금액은 100만원 내외
3. 2015년 2월부터 지원기금 소진 시까지(지원기금 총액 500만원)

## 제4조 (진료지원)

“갑”은 사전에 “을”과 협의해 진료지원 시기 및 인원수를 기금소진 시까지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 (환자 추천 방법)

1. “을”은 제2조 1항, 2항에 해당되는 환자 및 보호자와 면담, 구비서류와 함께 의료비 지원 추천서를 작성해 “갑”에게 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등을 통하여 의뢰한다.
2.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단 지원 의뢰 환자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 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 의료비 지원 추천서 1부
    - 2) 타병원 진료의뢰서(초진시 환자 원본 지참 필수) 1부

- 3) 수급자 증명서 1부
  - 4) 주민등록등본 1부
- 나. 일반 저소득자
- 1) 의료비 지원 추천서 1부
  - 2) 주민등록등본 1부
  -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증(영수증) 1부
  - 4) 세목별 과세 증명서 1부
  - 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증명서(해당자) 1부

## **제6조 (지원결과 통보)**

“갑”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환자의 결정공문을 작성하여 접수 후 2일 이내에 “을”에게 통보한다.

## **제7조 (진료)**

“갑”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제8조 (의료비 부담)**

“갑”은 환자의 본인 부담 총액 중에서 “을”에게 통보된 지원 금액을 진료비로 부담하고,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 **제9조 (진료 결과 회신)**

“갑”은 의료비 지원 결과보고서를 “을”에게 회신한다.

## **제10조 (협약의 해지)**

1. 본 협약은 “갑”, “을” 쌍방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2. “갑”은 “을”이 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할 경우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갑”과 “을”은 의료 관련 법규 또는 규정 등에 위배되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11조 (협약서 작성 및 해석)**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 쌍방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하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상 의의가 있는 사항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015. 2. OO.

“갑” : 한국원자력의학원장      “을”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조 철 구 (인)

김 영 배 (인)